

고시 제 호

## 하천구역 결정(또는 변경·폐지) 고시

「하천법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(또는 변경·폐지) 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○○○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하천명칭	하천등급	하천구간			면적(m <sup>2</sup> )	결정(변경·폐지)일, 사유
		기점	종점	거리(km)		

첨부서류

1.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
2.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(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.)